

### 3. 책임보험자의 대위권의 실현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최 증 진  
지도교수 정 영 석

保險者が 保險事故로 인한 손실을 被保險者에게 보상해 주고 그 被保險者 또는 保險契約者가 보험의 目的이나 第三者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를 法律上 取得하는 것을 保險者 代位(right of subrogation)라 하며, 이는 損害保險契約에서 利得禁止의 原則이 적용되어 保險者가 손해를 被保險者에게 보상해 주면 被保險者가 보험의 目的이나 第三者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를 이중으로 行事하지 못하고 그 權利를 保險者에게 移轉하도록 하고 있다.

이 研究는 商法 제681조에서 규정한 '保險目的에 관한 保險代位'와 商法 제682조의 '第三者에 대한 保險代位'의 類型中 손해가 第三者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被保險者의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保險金額을 支給하여 이러한 第三者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가 존재하는 第三者에 대한 保險代位에 대하여 責任保險者의 第三者에 대한 求償權이 第三者의 被保險者에 대한 항변으로 制限된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民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 相互間的 求償關係에 대하여 '일반적인 요건'과 '共同部分을 超過하는 共同免責'을 요구하고 있으며, 求償의 範圍도 단순히 상대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라기 보다는 共同免責을 행한 자가 출연한 금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判例의 입장에 의하면, 각 50%의 과실비율로 공동불법행위를 행한 자들 중 일방 공동불법행위자가 100의 損害를 입은 被害者에게 70을 지급하여 70만큼의 共同免責을 행한 경우, 이러한 일방 공동불법행위자가 상대방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請求할 수 있는 求償의 範圍는 相對方의 부담비율에 따른 35가 아닌 전체 손해액을 기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20에만 한정되고 있으며, 責任保險者 입장에서 보면 第三者에 대한 연대책무를 누가 변제하느냐에 따라 그 求償의 範圍가 달라지게 되는 바, 海上에서 衝突事故로 인하여 兩 船舶 所有者의 피변제자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責任保險者의 求償範圍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保險金額을 支給하며, 지급채무의 소멸 시효는 2년이다. 商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이 改正되기 전에는 責任보험의 경우에도 이러한 原則이 適用되어 피해자가 아닌 피보험자만이 保險金額을 請求할 수 있었고, 그 請求權이 시효로 소멸하면 被保險者 본인의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즉, 損害賠償의 直接的 責任은 被保險者이고 保險者는 間接적 책임을 負擔하지 아니 하였다.

동 法의 改正으로 인하여 責任保險契約에 편입되지 아니한 被害者도 法律규정에 의하여

直接 保險者에게 손해보상을 要求할 수 있게 되어 消滅時效期間도 추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責任保險者가 먼저 共同免責을 이행하고 求償해 올 경우 사고시부터 공동면책시까지의 其間이 더욱 추가하여 延長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現行 商法上 責任保險者는 被害者의 直接 請求權에 의하여 그 責任範圍가 확장되었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의 責任保險者의 책임범위는 判例에 의하여 더욱 增加하게 되었으며, 責任保險 關係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가 최 우선시되어야 함은 법리적인 타당성의 담보 문제가 아닌 政策的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被害者의 保護에도 충실하면서 責任保險者의 責任增大에 對應한 求償權 行사가 公平타당한 내용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責任보험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운용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판례상으로부터 認定되는 공동불법행위자 相互間의 求償權 制限 法理에 대응가능한 方案으로 '입법적용에 따른 실현방안'과 '민법상 辨濟者 代位에 따른 실현방안'에 의한 求償權 實現 方案을 研究하였다.

#### 4. 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김진석  
지도교수 정영석

본 연구는 현행 선원재해보상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육상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보다 매우 열악하다는데 관점을 두고 재해보상과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보험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선원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선원법, ILO협약에서 정하는 선원재해보상제도 등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제도를 종류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상의 재해보상내용을 살펴보았다.

선원의 경우 해상근로의 특수성 때문에 육상근로자와는 차별된 재해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 문제라든지, 행방불명보상, 소지품유실보상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육상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보다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은 육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달에 비해 낙후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